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시행요강



【제12조】(기능) 자문위원은 한국문학번역원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제 4 장 번역지원 심사위원회

【제13조】(설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2. 28.>

【제14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 3차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5.>
 ② 1차 심사위원은 해당 언어권 외국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5.>
 ③ 2차 심사위원은 해당 언어권 내국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2. 20.>, <개정 2011. 7. 15.>
 ④ 3차 심사위원은 매년 초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심사위원단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5.>
 <개정 2008. 2. 28.>

【제1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한국문학번역원사업과 관련하여 번역권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 2. 28.>

【제15조】1 (LTI Korea Translator 선정 심사위원회) ① LTI Korea Translator 선정을 위하여 해당 언어권 내·외부 전문가로 LTI Korea Translator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LTI Korea Translator 심사위"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 LTI Korea Translator 심사위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LTI Korea Translator는 원장이 위촉한다. 단, 언어권별 인원은 각 5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LTI Korea Translator 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LTI Korea Translator의 경우 3년 동안 자격을 지니며, 그 이후 심사를 통해 재선정될 수 있다.
 <신설 2014. 7. 9.>

제 5 장 지정도서 선정위원회

【제16조】(설치) 지정공모 대상 작품(이하 "지정도서"라 한다)의 선정을 위해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 규정에 의거, 도서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12. 27.>

1.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행요강	1
2. 영상 및 공연 예술분야 번역지원사업 시행요강	7
3. 한국도서 해외출판 지원사업 시행요강	9
4.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요강	13
5.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시행요강	18
6. 레지터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요강	22
7. 한국문학번역상 시행요강	26
8.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시행요강	30
9. 번역아카데미 운영사업 시행요강	34
10. KLTIT Translator 운영 요강(폐기)	40

【제17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선정위원장을 포함 총 10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12. 27.>
 ② 선정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③ 선정위원은 문학, 출판, 번역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12. 27.>
 <개정 2008. 2. 28.>

【제18조】(기능) 지정도서 선정위원회는 제4조 4항에 의거, 추천된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신규번역지원 사업 공모대상 도서를 선정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12. 27.>

제 6 장 심 사

【제19조】(심사대상작품) 공모지원 작품 중 접수 마감일 현재 번역 및 출간되지 않은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개정 2008. 2. 28.>

【제20조】(심사기준) 심사는 원작의 우수성, 원작의 이해도 및 번역권외의 완성도, 해당 언어권에서의 수용 기대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8.>

【제21조】(심사) ① 심사는 예비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4단계로 진행한다. <개정 2011. 7. 15.>
 ② 예비심사는 번역권 실무진이 행하며 제출서류 등 지원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1. 7. 15.>
 ③ 1차 심사는 선정자가 제출한 번역권외의 해외 현지 수용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11. 7. 15.>
 ④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원작에 대한 이해도 및 등가성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11. 7. 15.>
 ⑤ 3차 심사는 2차 심사를 통과한 번역권외 선정 작품을 한하여 지원의 적실성, 언어권별 지원빈수 조정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11. 7. 15.>

【제22조】(발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언론발표 및 번역권 인터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08. 2. 28.>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행요강

개정 2006. 2.17.
 개정 2006.12.20.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12.28.
 개정 2010.12.27.
 개정 2011. 7.15.
 개정 2013.12.19.
 개정 2014. 7. 9.
 개정 2014.10.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제2조】(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제 2 장 사업 개요

【제3조】(지원대상) 번역·출판 지원 대상 도서 선정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대상 도서를 외국어로 번역 출간하고자 하는 번역가, 국내의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12. 27.>, <개정 2011. 7. 15.>

【제4조】(사업구분 및 대상도서) ① 지원사업은 공모사업과 기획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2. 28.>
 ② <삭제 2014. 7. 9.>
 ③ 지원의 범주는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한 번역지원 대상 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7. 9.>
 ④ 대상도서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7. 9.>

제 7 장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제23조】(약정 체결) ① 번역지원대상자는 번역권외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번역지원약정서에는 지원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지원대상작품,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지원조건을 명시한다.
 ③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번역권이 보관하고, 1부는 지원대상자가 보관한다. <개정 2008. 2. 28.>

【제24조】(지원금의 지급) 작품의 완역일 경우 지원금은 선금급과 후불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샘플번역 지원의 경우는 번역완료 후 일시 지급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3. 12. 19.>

제 8 장 기 타

【제25조】(수당)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8.>

【제26조】(세부운영항목)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8.>

부 칙 (2006. 2. 1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5.)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8.)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번역지원 신청) 번역지원 신청은 해당 번역가가 소정의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7. 9.>

【제6조】(공모사업) ① 공모사업의 경우 모든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0.>
 ② 공모사업의 지원신청은 원종 상시 접수하고, 본기별 심사를 통해 번역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 10. 30.>
 ③ 공모사업 번역지원은 샘플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역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출판사가 샘플번역을 검토하여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원역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번역권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역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7. 9.>

【제7조】(기획사업) 해당도서가 한국문학의 해외 선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번역원이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기획번역 사업을 통해 번역권이 직접 번역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기획번역 대상자는 LTI Korea Translator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한다.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7. 9.>, <개정 2014. 10. 30.>

【제8조】(지원사업의 구분 등) ① 지원사업의 구분은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② 지원사업의 번역지원 건당 지원금액 기준은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지원도서의 장르, 분량, 언어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8.>

【제9조】(지원사업공고) 지원사업은 연간 1회 이상의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제 3 장 자문위원

【제10조】(설치) 원장은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5.>

【제11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 25.>

부 칙 (2010. 12. 2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5.)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9.)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행요강의 폐기) 이 요강이 시행될과 동시에 기존 KLTIT Translator 운영 요강은 폐기한다.

부 칙 (2014. 10. 30.)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상 및 공연 예술분야 번역지원사업 시행요강

개정 2009. 2.25
개정 2009.12.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화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문화컨텐츠 번역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28>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영상 및 공연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번역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09. 12.28>

제 2 장 사업개요

[제3조] (지원대상) ① 본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28>
② 업무협약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할 영상, 공연 및 기타 문화콘텐츠 작품을 지원한다. <개정 2009. 12.28>

[제4조] (번역가 및 감수자 선정) 본원의 영상 및 공연 예술분야 전문 번역가 풀을 활용하여 직접 심의 의뢰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모행식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12.28>

[제5조] (번역가 약정 체결) ① 번역가는 번역원과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번역을 진행하며, 감수자의 경우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2.28>
② 번역약정서에는 번역가의 인적 사항과 지원 대상작품,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조건을 명시한다. <개정 2009. 12.28>
③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번역원이 보관하고, 1부는 지원대상자가 보관한다. <개정 2009. 12.28>

[제6조] (지원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 ① 업무협약기관과 연간 지원계획을 협의하여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2009. 12.28>
② 지원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원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 7 -

제 5 장 심 사

[제14조] (심사대상) 해외 출판사가 지원신청을 한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5조] (심사기준) 심사는 대상도서의 현지 관심도, 출판계획의 구체성, 지원신청 출판사의 해당 언어권에서의 평판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6조] (심사) 제출서류 등 지원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7조] (발표) 출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대상 출판사에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09. 2.25>

제 6 장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제18조] (약정체결) ① 지원대상 출판사는 번역원과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원약정서에는 지원대상 출판사의 명칭과 주소, 지원대상 작품명, 번역자명, 지원금액, 출판부수, 납본부수, 출판사의 은행계좌 등의 지원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8>
③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번역원이 보관하고, 1부는 지원대상 출판사가 보관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9조] (지원금지급) 지원금은 해외 출판사가 출간을 완료하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출판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2.25>, <개정 2009. 9.4>

이사회와 심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9. 12.28>

③ 지원사업의 번역비 기준은 본원 규정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12.28>

제 3 장 자문위원

[제7조] (설치) 원장은 영상 및 공연 예술분야 번역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28>

[제8조] (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12.28>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28>

[제9조] (기능) 자문위원은 영상 및 공연 예술분야 번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9. 12.28>

제 4 장 기타

[제10조] (수당)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28>

[제11조] (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28>

부 칙 (2009. 2. 25)

[제1조] (시행일)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시행요건의 폐지) 이 요강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의 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사업 요강은 폐기한다.

부 칙 (2009. 12. 28)

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8 -

제 7 장 기 타

[제20조] (수당)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21조] (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25>

부 칙 (2006. 2. 17)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5)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5)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이사회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도서 해외출판 지원사업 시행요강

개정 2006. 2.17.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9. 4.
개정 2011. 7.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화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한국도서 해외 출판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 2 장 사업 개요

[제3조] (지원대상) 한국도서를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4조] (지원언어권) 모든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번역원에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때 온라인 접수는 한국문화번역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해당 서식을 작성,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11. 7.15>
② 출판지원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분기별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단, 본원 번역지원 도서를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6조] (지원어부결정) 접수된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어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 9 -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요강

개정 2006. 2.17.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10.12.27.
개정 2011. 7.15.
개정 2013.12.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화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 2 장 사업 개요

[제3조] (지원대상) 한국 도서의 해외 출간을 원하거나 해외 출간을 완료한 국내의 출판사 및 출판 에이전시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4조] (사업구분) 지원사업은 초록/샘물 번역지원사업, 작가소개 자료 제작 사업, 저작권 출판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개정 2013. 12.19>

[제4조1] 삭제 <2013. 12.19>

[제5조] (지원언어권) 모든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7조] (지원사업의 규모 등) ① 매년도 지원사업의 규모 등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와 심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8. 2.28>
② 지원사업의 진당 지원금액은 지원 내역명, 분할명, 언어권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 3 장 자문위원

[제8조] (설치) 원장은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9조] (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2.25>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25>

[제10조] (기능) 자문위원은 출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11조] (설치) 제3조의 출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2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4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본원 번역지원 도서에 대한 심사는 내부 심사로 별도 진행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3조] (기능) 심사위는 출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 제②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 10 -

[제6조] (지원신청) ① 초록/샘물 번역지원사업, 작가소개자료 제작사업, 저작권 출판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개정 2013. 12.19>
② 저작권 출판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언어권에 국내 도서의 저작권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의 출판사가 한국문화번역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개정 2011. 7.15>
<개정 2009. 12.28>

[제7조] (지원어부결정) 접수된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어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제8조] (지원사업의 규모 등) ① 매년도 지원사업의 규모 등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와 심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8. 2.28>
② 지원사업의 진당 지원금액은 지원 내역명, 분할명, 언어권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28>

제 3 장 자문위원

[제9조] (설치) 원장은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0조] (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2.25>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25>

[제11조] (기능) 자문위원은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 11 -

- 12 -

- 13 -

- 14 -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12조】(설치)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제13조】(구성)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2013. 12.19>

【제14조】(기능) 심사위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제8조 제②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 5 장 심 사

【제15조】(심사대상) 본 사업의 심사는 초록/생물 번역지원 사업,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제16조】(심사기준) ① 초록/생물 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 도서의 성격, 내용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개정 2013. 12.19>
 ②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의 경우 저각권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언어권, 도서장르, 저각권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③ 삭제 <2013. 12.19>

【제17조】(심사) ① 초록/생물 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제1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개정 2013. 12.19>
 ②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의 경우 제1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12.27>
 <개정 2008. 2.28>

【제18조】(선정 및 발표) ① 초록/생물 번역지원 사업은 신청사로부터 수시로 접수하여 상시 선정한다. <개정 2010. 12.27>, <개정 2013. 12.19>
 ②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선정한다. <개정 2010. 12.27>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대상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08. 2.28>

제 6 장 지원금 지급

【제19조】(지원금지급) ①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 내 기 출간도서의 지원금은 도서가 납본된 후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0. 12.27>
 ② 저각권 출판지원 사업 내 출간 예정도서의 지원금은 도서 출간이 완료되어 도서가 납본된 후 일괄 지급하되, 출판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27>
 ③ 삭제 <2013. 12.19>

제 7 장 기 타

【제20조】(수당)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28>

【제21조】(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2. 17)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5)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지원대상선정)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반기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제8조】(사업의 규모 등) ① 교류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8. 2.28>
 ② 공모사업의 전달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9조】(사업공고) 교류사업은 연간 1회 이상의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 3 장 자문위원

【제10조】(설치) 원장은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1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2조】(기능) 자문위원은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13조】(설치)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2.25>

【제14조】(구성) 심사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지원 선정 언어권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9. 2.25>

【제15조】(기능) 심사위는 해외교류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제8조 제②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제 5 장 심 사

【제16조】(심사대상) 매반기말까지 접수된 지원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제17조】(심사기준) 심사는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및 발표효과, 지원신청자의 사업추진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8조】(심사) ① 심사는 1회 심사로 완료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②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19조】(발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09. 2.25>

제 6 장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제20조】(약정체결) ①교류지원대상자는 번역원과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28>
 ② 교류지원약정서에는 지원대상 개인의 인력사항(혹은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을 명시한다. <개정 2008. 2.28>
 ③ 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번역원이 보관하고, 1부는 지원대상자가 보관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제21조】(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번역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시행요강

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 2.17.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9.12.28.
개정 2010.1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해외교류사업(이하 "교류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교류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 2 장 사업 개요

【제3조】(지원대상) 해외교류를 위한 국내외 문학·미술 행사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12.28>

【제4조】(사업구분) 교류사업은 번역원이 기획하여 시행하는 해외교류 기획사업(이하 "기획사업"이라 한다)과 자유공모를 통해 심사하여 지원하는 해외교류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단,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사업 및 공모사업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12.28>, <개정 2010. 12.27>

【제5조】(지원언어권) 모든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2.28>

【제6조】(지원신청) 지원신청은 해당 지원자가 본인 홈페이지 웹사이트(www.klit.or.kr)에 회원가입 후 소정의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2.25>, <개정 2009. 12.28>

제 2 장 결 과 보 고

【제22조】(결과보고) 지원 대상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2. 25.
개정 2009.12. 27.

제 8 장 기 타

【제23조】(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번역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28>, <개정 2009. 2.25>

부 칙 (2006. 2. 1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5)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8)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사 업 개 요

【제3조】(지원대상) 국내 문단에 등단하고 1권 이상의 창작 작품집을 출간한 문인(소설가, 시인, 극작가, 아동문학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출판사 편집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제4조】(사업구분) 레지던스 사업은 번역원에서 지정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정 프로그램과 제휴국가 선택 및 활동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참가하는 자유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제5조】(지원대상국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신청은 해당 문인이 본인 홈페이지 웹사이트(www.klit.or.kr)에 회원가입 후 소정의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2.25>

【제7조】(지원대상선정) 연 1회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09. 2.25>

【제8조】 (사업의 규모 등) ① 레지던스 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는 번역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② 레지던스 사업의 개별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 2.25>

【제9조】 (사업공고) 레지던스 사업은 연간 1회 이상의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09. 2.25>

제 3 장 자문위원

【제10조】 (설치) 원장은 레지던스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25>

【제11조】 (구성) ①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2.25>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25>

【제12조】 (기능) 자문위원은 레지던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9. 2.25>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13조】 (설치) 레지던스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2.25>, <개정 2010. 12.27>

【제14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총 5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09. 2.25>

【제15조】 (기능) 심사위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 제②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 2.25>

【제16조】 (심사대상) 1개월 동안의 공모기간에 접수된 레지던스 사업 지원신청자료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25>

【제17조】 (심사기준) 심사는 문학적 역량, 활동계획의 타당성(자유 프로그램), 해당 언어 구사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2.25>

【제18조】 (심사) ① 심사는 1회 심사로 완료한다.
 ②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2.25>

【제19조】 (발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09. 2.25>

제 6 장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제20조】 (약정체결) ①레지던스 사업 지원대상자는 번역원과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교류지원약정서에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을 명시한다.
 ③ 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번역원이 보관하고, 1부는 지원대상자가 보관한다.
 <개정 2009. 2.25>

【제21조】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레지던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대상자, 혹은 주관단체에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번역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2.25>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원장의 임기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자문위원은 한국문학번역상 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제 6 장 심사위원회 및 심사

【제15조】 (심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한국문학번역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는 각 언어권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해당년도 심사대상작품 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는 1차 언어권별 심사를 거쳐 각 언어권별로 수상후보작품을 압축하여, 최종심사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운영위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운영 및 회의) ① 언어권별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회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최종심사위원회는 언어권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장은 언어권별 분과위원장들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기 타

【제18조】 (수당) 심사료는 사례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되,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2.1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결과보고) 지원 대상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2.25>

제 8 장 기타

【제23조】 (세부운영방침) 이 요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번역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25>

부 칙(2008. 2. 28.)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5)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25.)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7.)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0.)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문학번역상 시행요강	개정 2006. 2.17.
	개정 2006.12.20.
	개정 2009. 2.25.
	개정 2010.12.27.
	개정 2012.12.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한국문학번역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 범위는 한국문학번역상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제3조】 (상의 명칭) ① 한국문학번역상의 국문명칭은 <한국문학번역상>으로, 영문명칭은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로 하되, 시상회수를 함께 표기한다.
 ② 시상회수에는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한 <한국문학번역상>의 시상회수를 산입한다.

【제4조】 (시상주기) 한국문학번역상은 매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 (설치) ① 한국문학번역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의 위원은 번역원 이사 중에서 3인 내외로 선임하며, 운영위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6조】 (기능) 운영위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문학번역상 추진일정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2. 한국문학번역상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한국문학번역상 심사대상작품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문학번역상인신상 운영요강

개정 2006. 2.17.
개정 2006.12.20.
개정 2009. 2.25.
개정 2010.12.27.
개정 2012.12.20.
개정 2013.12.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인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강의 적용범위는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한다.

【제3조】 (상의 명칭) 번역원인신상의 국문명칭은 <한국문학번역원인신상>으로, 영문 명칭은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for New Career Translators>로 하되, 시상회수를 함께 표기한다.

제 2 장 공 모

【제4조】 (공고) 번역원인신상은 매년 1회 공고를 통해 공모하여 운영한다.

【제5조】 (공모대상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7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공모신청) 공모신청서와 번역본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모대상 작품) ① 번역원인신상의 공모대상 작품으로 매년 5편 이내의 지점작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② 공모대상 작품은 시상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 한국작가의 국문 단편

개정 2009. 2. 25.
개정 2011. 3. 29.
폐기 2014. 7. 9.

【제30조】(강학제도 지원절차) ① 연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명시된 서류 <개정 2011. 7.15>
2. 소정양식의 질문가 추출서 <개정 2011. 7.15>
3.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1. 7.15>

② 연수지원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연수지원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강학제도 지원중단) 연수지원 대상자와 아카데미 사이에 연수지원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징계) ① 원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요강의 폐지) 이 요강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전문번역가 육성사업 시행요강을 폐지한다.

부 칙 (2011.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